

# 해외건설 세무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서

해외건설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와 삼일회계법인, 삼정회계법인, 안진회계법인, 한영회계법인(가나다순, 이하 “회계법인”이라 한다)은 해외건설기업에 세무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, 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 (목적)

이 협약은 협회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(이하 “지원기업”이라 한다)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회계법인에 요청하고, 회계법인은 세무컨설팅의 수행에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지원기업에 세무컨설팅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컨설팅 내용 및 방법)

- ①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전문가와 해외 협력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지원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
  - 가. 해외건설 계약관련 세무 자문
  - 나. 해외건설 분쟁관련 세무 자문
  - 다. 해외건설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세무 자문
- ② 회계법인은 컨설팅 제공에 있어 해외 협력 회계법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.

## 제3조(컨설팅 결과 보고)

- ① 회계법인은 지원기업에 제공한 컨설팅의 결과를 협회가 제공하는 양식 또는 회계법인의 자체 양식에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.
- ② 회계법인은 전체 사업결과보고를 위해 협회가 제작하는 세무컨설팅 사례집 작성에 협조한다.

## 제4조(선관의무)

회계법인은 컨설팅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.

## 제5조(대가의 지급)

협회는 회계법인에게 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팅의 대가 및 해외 협력 회계법인의 활용에 대한 대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

- ① 컨설팅 대가는 시간당 500,000원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로서 최대 컨설팅시간은 협회가 별도 안내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② 해외 협력 회계법인 활용에 대한 대가는 별도 안내하는 최대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③ 회계법인은 컨설팅이 종료한 후 컨설팅 대가를 다음달 5일까지 세금계산서와 함께 청구하고, 협회는 청구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. 단, 대가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협회와 회계법인간 다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에 따른다.

#### **제6조(비밀유지)**

양 기관은 사전에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업무상 내용(지원기업의 사업 내용을 포함한다)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.

#### **제7조(협약기간)**

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3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.

#### **제8조(특약사항)**

이 협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안별로 양 기관이 합의하여 처리한다.

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3월 29일

해외건설협회  
회장 박선호

삼일회계법인  
대표 윤훈수

삼정회계법인  
대표 김교태

안진 회계법인  
대표 홍종성

한영 회계법인  
대표 박용근